#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15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 강득구·김남근·김재원

임광현 · 민형배 · 김병주

서삼석 • 이광희 • 염태영

민병덕 의원 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음. 그러나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.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은 불가능함.

이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, 제8조제1항·제2항 및 제16조제1항·제2항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의회법안」(의안번호 제201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

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특별시·광역시·도(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·시·군·자치구 및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교육청을"을 "특별시 ·광역시·도(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·시·군·자치구, 특 별시·광역시·도의 교육청 및 지방의회를"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"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각각 "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·도의회의 장"으로 한 다.

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"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각 각 "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·도의회의 장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"지방자치단체"란 특별시 • 📗 3. ----특별 광역시·도(제주특별자치도를 시·광역시·도(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· 시 ·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• 시 • 군・자치구, 특별시・광역시 군・자치구 및 특별시・광역 시·도의 교육청을 말한다. •도의 교육청 및 지방의회를 4. ~ 7. (생략) 4. ~ 7. (현행과 같음) 제8조(감사기구 장의 임용) ① 제 제8조(감사기구 장의 임용) ① -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 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 체의 장 및 시·도의회 의 장-형 직위로 임용한다.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 여는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 의4 제2항ㆍ제4항또는「지방공 무원법」 제29조의4 제2항ㆍ제 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.
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 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・운 영하고, 그 심사를 거쳐야 한 다.
- 제16조(감사담당자의 임용) ① <u>중</u> <u>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</u> <u>장</u>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 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 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  -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 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제5조 제2항에 따른 합 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,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
치단체의 장 및 시·도의회의
<u> 장</u>
제16조(감사담당자의 임용) ① <u>중</u>
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
<u>의 장 및 시·도의회의 장</u>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
치단체의 장 및 시·도의회의
장
<del>_</del>
<u>.</u>